

양 천 구

시 정 요 구

제 목 자동차 수출이행 여부 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소홀

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과

내 용

1. 업무개요

■■■과는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차 수출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6호 및 제8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는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동차 수출을 위해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자동차 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¹⁾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령」 제32조(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에 따르면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그 말소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²⁾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수출이행 여부를 해당 말소등록을 한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에 따른 구청장 위임사무

2) 2024. 6. 18. 「자동차등록령」 개정 전 9개월 이내

또한 법 제84조(과태료)제4항제6호에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차 항목에는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만원,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5일 이상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등록부서에서는 자동차 수출을 위해 말소등록을 신청한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1년 이내(2024. 6. 18. 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 지연일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과는 자동차 수출을 위해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수출이행 신고기한(2024.6.19. 이후 말소 건은 1년 이내, 2024.6.18. 이전 말소 건은 9개월 이내)이 경과하였음에도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아 수출이행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5건과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지연신고한 5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자동차 말소등록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수출이행 여부 신고 미이행 및 지연 내역

연번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이행신고만료일	부적정 내역	비고
1			2023.9.22.	수출이행신고 미이행	현재까지 수출이행여부 확인 불가, 시정요구 대상 (과태료 부과)
2			2023.9.26.	수출이행신고 미이행	
3			2023.9.26.	수출이행신고 미이행	
4			2024.1.17.	수출이행신고 미이행	
5			2024.1.20.	수출이행신고 미이행	
6			2024.6.15.	수출이행신고 82일 지연 (2024.9.5. 수출이행)	수출이행 여부는 확인된 점을 고려, 시정요구 대상에서는 제외
7			2024.7.6.	수출이행신고 80일 지연 (2024.9.24. 폐차)	
8			2024.12.13.	수출이행신고 117일 지연 (2025.4.9. 수출이행)	
9			2024.12.13.	수출이행신고 124일 지연 (2025.4.16. 수출이행)	
10			2024.11.22.	수출이행신고 95일 지연 (2025.2.25. 수출이행)	

4.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

▣▣▣▣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조치할 사항

▣▣▣▣과장은

자동차 수출이행 여부에 대한 신고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수출이행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5건에 대하여 건당 50만원씩 총 2,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차 말소등록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